

## AllianzGI Best of Korea 혼합투자신탁B-1호

이 투자설명서는 AllianzGI Best of Korea 혼합투자신탁 B-1 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AllianzGI Best of Korea 혼합투자신탁 B-1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신탁명 : AllianzGI Best of Korea 혼합투자신탁 B-1 호
2. 자산운용회사명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02) 2071-9900
3. 판 매 회 사 명 : 하나은행 1588-1111 / 하나증권(주) 1588-1112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서울지점 02)3707-0400  
대투증권 1588-3222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11월 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 주소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알리안츠글로벌 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홈페이지 [www.allianzglobalinvestors.co.kr](http://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상기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	1년차 01.3.3~02.3.2	2년차 02.3.3~03.3.2	3년차 03.3.3~04.3.2	4년차 04.3.3~05.3.2	5년차 05.3.3~06.3.2	6년차 06.3.3~07.3.2	7년차 07.3.3~08.3.2
투자신탁	16.07%	-4.59%	16.87%	5.22%	13.72%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구분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합계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분의 4.4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분의 10.5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5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분의 0.1	매 3개월
	기타비용 <sup>1)</sup>	연 1,000분의 3.8	
	총 보수 · 비용 비율	연 1,000분의 19.3	

주1)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추정치임

2.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년 3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 ·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입 · 환매 절차 등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및 인터넷에서 직접 매입·환매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매입절차

17시 이전(오후 5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7시경과 후(오후 5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2) 환매절차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에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투자설명서 본문참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본문]

##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AllianzGI Best of Korea 혼합투자신탁 B-1 호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혼합형, 추가형, 개방형
- 4. 자산운용회사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 5. 최초설정일 및     2001. 3. 3     투자신탁 설정  
연혁                   2004. 7.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으로의 변경  
                          2005. 8. 19   회사명 명칭변경에 따른 펀드명 변경  
                          2008. 9. 30   책임운용역 변경  
                          2008. 11.28  책임운용역 변경

### 6.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연도	현재 2008. 3. 24	6개월전 2007. 9. 24	1년전 2007. 3. 24	1년 6개월전 2006. 9. 24	2년전 2006. 3. 24
수탁고 금액					
수탁고증가율 <sup>주)</sup>					-

주)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전세계적으로 700 조원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Allianz 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 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 등 30% 이하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채권 및 유동성자산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과 함께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30%이하, 채권에 60%이하(주식관련사채 50%이하) 투자합니다.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대상종목의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수익 예상치,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 펀더멘탈에 기초하여 선별된 우량한 종목 위주로 투자하며, 채권에의 투자는 주로 A-등급 이상의 우량회사채에 한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에 직접 투자함에 따라 투자자는 금리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된 가격변동위험 및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주식거래정지등 포함)을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되고, 30%이하를 국내의 주식에 투자되므로 5 등급중 3 등급(아래 표 참조)에 해당되는 중간 정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의 높은 시장변동 위험을 감수 할 수 있으며, 채권시장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등급 안내 및 당사펀드 예시>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Allianzgi 기업가치향상장 기주식펀드 등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에 30~60% 투자하는 경우	Allianzgi 동유럽주식 50 혼 합 펀드 등
3 등급	중간위험	주식에 30%이하 투자 또는 투자적격등급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Allianzgi 브릭스 30 혼합 재간접펀드 등
4 등급	낮은 위험	투자적격등급이상의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Allianzgi TotalReturn 채권 H-5 호 등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MMF 등)	Allianzgi Safe 신종 MMF G-1 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주기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allianzglobalinvestors.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순자산)		
강정구	68년생	이사	7개	764억	학력:연세대학교 경영 대학원 경력:AIG 자산운용 등 경력 14년	주식운용팀장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quity 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수익  
를 추이

나.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6개월 08.3.24~07.9.23	최근1년 08.3.24~07.3.23	최근3년 08.3.24~05.3.23	최근5년 08.3.24~03.3.23
투자신탁	%	%	%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 시
합계	-	

2. 투자신탁에게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4.4	매 3개월
판매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10.5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5	매 3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연 1,000 분의 0.1	매 3개월
기타비용 <sup>1)</sup>	연 1,000 분의 3.8	
총 보수 · 비용 비율	연 1,000 분의 19.3	

※ 투자신탁 부담하는 비용 중 기타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함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 및 간접투자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서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

간별 예시

(단위: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년 3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매입할 수 있습니다. 17시 이전(오후 5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17시 경과 후(오후 5시)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약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토요일은 제외]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5시)이전 까지 가능합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절차
  - 수익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등에서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지급.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에 지급.
  -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 ※ **간접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 17시(오후 5시)이전까지 가능합니다.**
- 환매수수료
  -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환매연기
  -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제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3. 이익 등의 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현금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상환금 지급
  - 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 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시효등
  - 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나.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종목의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수익 예상치, 재무상태, 경영상태등 펀드멘탈에 기초하여 선별된 우량한 종목 위주로 투자됩니다. 채권에의 투자는 주로 A-등급이상의 우량회사채에 한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 투자신탁을 운용합니다. 시장에 대해 중립적인 전망을 가질 경우 주식 30%이하, 채권 60%이하, 단기유동성등에 10%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에서 보다 양호한 기회가 예상될 경우에는 상기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투자 : 성장잠재력, 수익 예상치, 재무상태 그리고 경영상태 등의 펀드멘탈에 기초한 높은 상승 잠재력과 큰 시가비중 등의 특성을 가진 우량종목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한 최종 종목선정에 있어서는 당사 고유의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된 장기적인 가치에 대비한 개별 종목의 현재가격을 평가할 것입니다.

- 채권투자등 : 국공채 등이나 신용평가등급 A-이상의 투자적격 회사채에 투자됩니다. 신용리스크 대비 개별 유가증권의 수익률을 분석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의 채권부분이 운용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기준

- 시가총액이 큰 우량 대형주
- 시장점유율, 매출액, 브랜드이미지, 시가총액등을 고려하여 각 산업별 대표종목 구성
- 매력적인 기업가치
- 펀드멘탈 우량종목
- 견실한 대차대조표와 현금흐름

포트폴리오  
운용전략

- 모델포트폴리오내 기업들의 영업상황 및 재무상황 수시 점검
-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종별 분산 최적화
- 시장상황 및 업종별 수익전망에 근거한 적절한 비중조정
- Allianz network 를 통한 Cross-border research 활용

### 2.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이자율, 개별종목주가 및 주식시장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이 보유한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일반적으로 채권과 어음은 금리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의 가격하락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및 어음 발행사의 부도, 파산,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및 환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타위험	그 밖에도 환매청구시와 환매일의 순자산가치변동위험 및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적을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주식 및 채권에 신탁재산의 40%이상 투자
①	주식 30%이하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함)
②	채권 주식관련 사채 50%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

③	자산 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이하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기업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⑤	금리스 왓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100% 이하	
	수익증권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단,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 증권은 30%까지 투자 가능
	주식및채권 관련장내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투자증권 대여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채권 총액의 50%이하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예외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 금지.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

		*
	<p>가.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  나.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은행, 농협, 증권회사 등)이 발행한 채권이나 채무증서,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상 공모채권에 한함)이나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 채권유통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정),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p> <p>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 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3월간 평균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투자. 이 경우 매년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간 적용)</p>	*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주식투자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 발행 총주식의 10%를 초과하여 투자</p> <p>나. 이 투자신탁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투자. 단, 시가총액비중 10% 초과시 시가비중까지 가능</p>	
파생상품 투자	가.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 *
	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후순위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부분 해당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	--

##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1. 자산의 평가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 2. 기준가격의

####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

	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allianzglobalinvestors.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1. 자산운용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생명빌딩 18 층 02-2071-9900
회사연혁	2000. 12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1. 1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1. 3 영업 개시 2005. 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사명변경

##### 2. 주요 업무

###### - 의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음

##### 3. 최근 2 개 사업

(단위:백만원)

###### 년도의 요약

###### 재무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제5기	제4기	항목	제5기	제4기
자산	6,885	2,027	수익	1,057	220
주식	1,944	536	유가증권매매이익	877	124
채권	3,366	1,004	배당수익	30	17
유동자산	1,451	470	수입이자	149	77
미수이자	17	1	파생이익		

기타	107	16	기타이익	1	2
부채	899	104	손실	198	148
미지급금	71	14	유가증권매매손실	105	102
기타	828	90	보수	91	44
원본	5,987	1,923	파생손실		
			기타손실	2	2

4. 운용자산 규모

(단위:억좌)

(06년 2월 28일)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재간접	총계
수탁고	2,053	460	6,166	8,066	1,407	1,570	19,772

5.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순자산)	
강정구	68년생	팀장	7개	764억	학력:연세대학교 경영 대학원 경력:AIG 자산운용 등 경력 14년

※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운용회사 또는 투자신탁협회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T. 1588-1111	1991. 7 은행업무개시 1999. 1 보람은행과 합병 2002. 2 서울은행과 통합
하나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T. 1588-1112	1962. 2 회사설립 1986. 11 주식상장
대투증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 1588-3222	1968. 11 회사설립 2005. 12 하나금융그룹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 티드 서울지점	서울 태평로 1가 48번지 서울 파이낸스 빌딩 29층 T. 02-3707-0400	2000. 9 판매회사 등록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판매행위

준칙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나.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함)

다.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라.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마.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회사명	홈페이지
하나은행	www.hanabank.com
하나증권	www.clickhana.co.kr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외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T. 02-729-8000
회사연혁	1967 설립, 1994 주식상장

2. 주요 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  
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  
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  
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  
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  
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외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 T. 02-729-8402
회사연혁	설립일: 2003년 4월 1일, 자본금: 25.5억원

2. 주요 업무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자산운용회사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V. 채권평가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KIS 채권 평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T. 02-3215-1400	설립일 : 2000. 6. 20 자본금 : 30억원
한국채권 평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T.02-399-3350	설립일 2000. 5. 29 자본금 : 50억원
나이스 채권평가	서울시 종로구인사동 43번지 T. 02-398-3900	설립일 : 2000. 6. 16 자본금 : 47.5억원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

##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I. 수익자의 권리

##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의결사항
  - ①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신탁기간·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③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④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④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⑤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 ①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②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집주체 및  
통지
  - ①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기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①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③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①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②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①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다.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②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 나. 손익계산서
  - 다. 기준가격계산서
  - 라.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③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 ④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 ⑤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수시공시

### - 약관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가. 수탁회사의 변경
- 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다.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라.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마.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의결권 행사

- 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 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allianzglobalinvestors.co.kr](http://www.allianzglobalinvestors.co.kr))·판매회사(판매회사 개요 참조)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마.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아.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